

#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 안내

## 반기별 지급 신청자격('23년 귀속분)

- 2023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(배우자 포함)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.
  - 근로소득 외 타소득(사업 총과입)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봅니다.
- 다만, 2024년 6월 정산 시에는 2023년의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(뒷면 참조),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.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- 또한, 다음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반기지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.
  -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(그 배우자 포함)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
  - 사업자외의 자(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)로부터 받은 근로소득
  -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
  - 2023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(배우자 포함)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(일용근로자 제외)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

## 반기별 지급 및 정산

예상 연간 산정액의 35%를 상반기분으로 지급(12월)하고, 다음해 6월 정산을 통해 연간 산정액이 상반기분 기지급액 보다 많으면 차액을 추가 지급하고, 적으면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합니다.

- 상반기신청자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\*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.
  - \*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로자:  $\text{상반기총급여} + (\text{상반기총급여} \div \text{근무월수}) \times 6$
  - \* 일용근로자,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:  $\text{상반기총급여} \times 2$
- 하반기분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실제 총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.

### 2024년도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및 지급일정

구분	신청기간	지급시기	지급액
'23년 하반기 소득분	'24.3.1.~'24.3.15.	'24년 6월 중	추가지급 또는 환수*
'24년 상반기 소득분	'24.9.1.~'24.9.19.	'24년 12월 중	예상 연간 산정액의 35%

\* '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'이 이미 환급한 '상반기분 근로장려금'보다 많으면 차액을 추가 지급하고, 적으면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

QR코드를 스캔하시면  
안내대상 여부 및 신청요건을  
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

안내대상 여부



신청요건

국세청에서는 장려금 지급과 관련하여  
통장사본과 체크카드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 
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에  
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

www.hometax.go.kr

일 잘하는 정부  
더 편안한 국민



2024년 신청

#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

[제도안내]



## 근로장려금(ETC)·자녀장려금(CTC)란?

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, 사업자(전문직 제외)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근로·자녀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, 실질소득과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##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자격

근로소득,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(① ~ ③)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.

※ 가구 내 2인 이상 거주자가 신청 시에는 1인에게만 지급

### ① 가구유형

- 2023년 12월 31일 현재, 가구원 구성,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

단독가구	배우자 <sup>1)</sup> 와 부양자녀 <sup>2)</sup> , 70세 이상 직계존속 <sup>3)</sup> 이 모두 없는 가구
홀벌이가구	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(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)
맞벌이가구	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 <sup>4)</sup> 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

- 법률상 배우자(사실혼 제외),
- 18세 미만으로서 비교세·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자녀
- 70세 이상으로서 비교세·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, 주민등록표 상 동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  
※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(병동 등 일시퇴거 포함)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
- 총급여액 등 : 근로소득(총급여액), 사업소득(총수입금액×업종별 조정률), 종교인소득(총수입금액)의 합계액

### ② 소득요건(부부합산)

- 2023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

#### 총소득 기준금액

구분	단독가구	홀벌이가구	맞벌이가구
근로장려금	2,200만 원	3,200만 원	3,800만 원
자녀장려금	해당없음	7,000만 원	

#### 총소득이란?

근로소득(총급여액), 사업소득(총수입금액×업종별 조정률), 종교인소득(총수입금액), 기타소득(총수입금액-필요경비), 이자·배당·연금소득(총수입금액)을 합한금액으로 비교세·퇴직·양도소득은 제외

### ③ 재산요건(가구원 합산)

-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·토지·건물·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.4억원 미만일 것  
※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아니함

##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 제외자

근로소득,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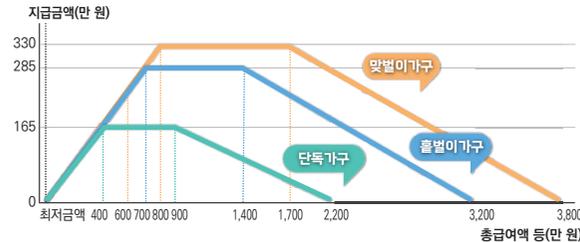
-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. 다만, 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,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
-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
- 2023년 중 거주자(배우자 포함)가 변호사·변리사·의사 등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
- 2023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(배우자 포함)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(일용근로자 제외)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

## 근로·자녀장려금 가구유형에 따른 지급가능액

구분	근로장려금		자녀장려금	
	총소득기준금액	최대지급액	총소득기준금액	최대지급액
단독가구	2,200만 원 미만	165만 원	해당없음	
홀벌이가구	3,200만 원 미만	285만 원	7,000만 원 미만	자녀1인당 100만원 (최소 50만원)
맞벌이가구	3,800만 원 미만	330만 원		

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제외 또는 감액될 수 있으며, 재산합계액이 1.7억원 이상 2.4억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%만 지급됩니다.

#### 근로장려금



## 신청기간(2024년도)

- '23년 귀속 하반기분 → 2024년 3월 1일 ~ 3월 15일까지
- '23년 귀속 정기분 → 2024년 5월 1일 ~ 5월 31일까지
- '23년 귀속 기한 후 신청 → 2024년 6월 1일 ~ 12월 2일까지
- '24년 귀속 상반기분 → 2024년 9월 1일 ~ 9월 19일까지

##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방법(선택)

### ①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

- 네이버·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'신청하기' 버튼 누름 → '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' 연결 →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→ 신청완료

### ②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

- QR코드
  -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→ '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' 연결 →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→ 신청완료
- 홈택스(PC, 모바일)
  - www.hometax.go.kr 접속 → 장려금·연말정산·전자기부금 → '근로·자녀장려금' → 근로장려금(정기/반기) 신청 → 개별인증번호·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→ 신청완료

### ③ ARS (자동응답) 전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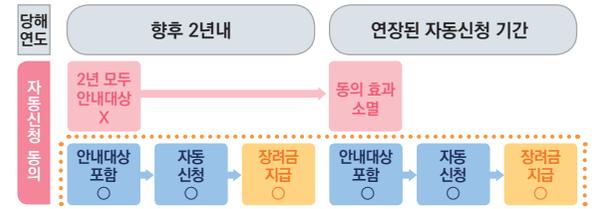
- 1544-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

### ④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

- 홈택스(PC, 모바일)
- www.hometax.go.kr 접속 → 로그인\* → 장려금·연말정산·전자기부금 → 근로장려금(정기/반기) → 직접입력 신청  
\* 공동·금융 인증서/간편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

## 근로·자녀장려금 '자동신청'이란?

- 장려금 신청 대상\*인 60세 이상 고령자, 중증장애인(가구원 포함)이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 대상에 포함되면, 별도로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.  
\*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에게 발송하는 장려금 신청 안내문에 자동신청 동의 관련 내용 포함
- 자동신청 동의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(PC, 모바일), 자동응답전화(ARS 1544-9944)를 이용하거나, 「장려금 전용 상담센터」(1566-3636)에 전화하여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.



근로·자녀장려금 상담센터 1566-3636

\* 근로·자녀장려금 상담센터는 신청·지급기간에만 운영